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속증여세
생산일자	2006. 07. 26.	귀속연도	2006
제목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증여세법 제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증여세법 제1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057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52조, 증여세법 제13조, 민법 제1115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수증받은 증여금액이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상속세 합산세 합산대상금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부분의 유류분 반환금액이 10억원이고, 합산대상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만 과세된 금액 중 반환금액이 5억원(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으로 합계액 15억원을 B에게 소송에 의하여 반환함.

○ 질의내용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B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A와 B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住所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0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0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7.12.31. 신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12.31. 신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12.31. 신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12.31. 신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12.31. 신설)

0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977.12.31. 신설)

0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 6.12.

1.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음.
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3.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